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알림

1. 신약 해제(예정) 의약품(36개)를 의약품 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20.7.8.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52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수의약품수출입협회장, 보건복지위원장 귀하

주무관	정욱진	사무관	출장	의약품정책과	전결 2020.7.8.
협조자				장	채규한
시행	의약품정책과-9543	(2020. 7. 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차세대 정보화 TF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09	팩스번호	043-719-2606	/ grand8264@korea.kr	/ 대국민 공개